

재해개요

2019.07.25.일(목) 11:28분경 경기도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아연각파이프 1묶음(6m*15개, 264kg)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작업 중, 포크 위 파이프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재해자가 파이프 위에 올라 앉아 무게 중심을 맞춘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로 이동중 충격(흔들림)으로 떨어져 사망(h=2.0m)

【 유사 재해사례 (최근 10년간 15건) 】

- ◆ 2019.01.25.일(금) 레이몬드 밀의 부품(세퍼레이터 몸통)을 설치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로 세퍼레이터 몸통을 들어 올리고, 세퍼레이터 몸통에 재해자가 올라가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사망(h=3.8m)
- ◆ 2018.01.23.일(화)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우고 그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지용 각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(h=2.8m)
- ◆ 2015.10.09.일(금)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상태에서 포크(팔레트) 위에 올라가 창고 내부 H빔 돌출부위 산소 절단작업을 준비하던 중 떨어져 사망(h=2.0m)

재해상황도



<사고발생 상황(CCTV)> ① 지게차 포크 위 화물에 탑승한 재해자가 이동중 충격(흔들림)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짐 → ② 1차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부딪힘 → ③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짐 → ④ 중심을 잃은 사각파이프(264kg)가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재해자 위로 떨어짐(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)

재해발생 원인

- 지게차 포크 위 화물(사각파이프)에 사람이 탑승
 -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화물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사람이 탑승
- 화물을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동
 -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실은 후, 포크를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동

재발방지 대책

- 승차석외 탑승금지
 -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 또는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화물 또는 포크에 올라가지 말 것
- 지게차 안전운전수칙 준수
 - 장척물의 화물은 지게차로 들어올리기 전 무게중심을 맞춘 후 들어 올릴 것
 - 포크는 바닥으로부터 낮은 위치에 위치시킨 후 이동하고, 상하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